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27
2025.4.21.

■ 판례 동향

조미용 주류에 대한
판례 해설

■ 품목분류 동향

세포배양시스템
(XDR Bioreactor)과
XDR-2000 PRO BAG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부록

美 관세부과 대상 美·韓
관세율표 연계표 수록

美 "먼저 해야 이익" 압박하는데 …
관세 골든타임 대응 묘수는



ISSN 2799-72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최흥식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인 쇄	경성문화사
배 포	(주)아림디엠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4월 21일(통권 제2127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美 "먼저 해야 이익" 압박하는데 … 관세 골든타임 대응 묘수는

06 Weekly News

16 전문가 칼럼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파트너 변호사

관세행정실무해설

22 **관세행정안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거래 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29 **질의응답사례**

커버링테이프의 HS Code

판례동향

31 **관세판례해설**

조미용 주류에 대한 판례 해설

품목분류동향

38 **품목분류해설**

세포배양시스템(XDR Bioreactor)과 XDR-2000 PRO BAG의 품목분류

47 **품목분류 M.A.P**

낫또 분류 사례

50 **세번 바로잡기**

욕실용 발매트

52 **상식 밖의 상품학**

탁주는 지방산, 소주는 말론산 … 전통주별 맛·향 차이나는 이유

최신개정법령

54 **고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부록

58 美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자동차부품 美·韓 관세율표 연계표

67 美 관세부과 대상 철강 파생제품의 美·韓 관세율표 연계표

74 美 관세부과 대상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美·韓 관세율표 연계표

美 "먼저 해야 이익" 압박하는데 ··· 관세 골든타임 대응 묘수는

對美 투자 늘어날수록 한국 수출도 증가 … 韓·美 협상의 키는 AI·조선·에너지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 우방국을 대상으로 '우선 협상(top targets)'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韓·美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美 행정부는 한국 등을 겨냥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美 재무장관은 4월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일본, 한국, 베트남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수장들의 미국 방문 일정이 연쇄적으로 잡혀 있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까지 연계하는 통상·안보 패키지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지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있는데다 조기대선까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성급한 협상은 오히려 발등을 찍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세 속에서 한국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돌파구는 무엇일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고율의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對美 투자를 늘릴수록 한국의 수출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수지를 수치로만 해석한 것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조성할수록 한국의 對美 무역흑자는 필연적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對중국 무역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産 중간재 수요가 한국으로 이전되며 미국의 한국産 수입 의존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투자 유인 정책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은 활발히 이뤄졌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상당 부분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결국 미국 내 투자는 한국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産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상승하고, 현지 매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양국 산업 간 연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연구원의 박성근 연구위원은 "한국産 중간재와 자본재는 미국 제조업 생산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기능했으며, 이들 품목의 수출 확대가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의 정당성과 韓·美 간 상호보완적 구조를 미국 측에 명확히 제시하고 통상 협상의 논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對美 투자 확대에 따라 당분간 한국의 중간재, 자본재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전망이지만, 최근 현지 진출한 기업들의 미국 내 현지 조달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증가하는 추세다.

韓·美 전문가들은 결국 조선, 방산, 에너지, AI·반도체 등 산업 협력이 유망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생산 역량과 미국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15일 개최한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 美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마틴 초르젬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에서 미국産 AI 반도체 수입 제한이 없는 몇 안 되는 국가로, 규제가 있는 중국, 인도 등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며, AI 분야를 지목했다. 미국은 AI 확산 규칙으로 국가별로 확보 가능한 AI 프로세서 수를 제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의 마이크 예 아시아 총괄대표는 "한국은 AI 학습의 필수 자원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반도체의 주요 공급국"이라는 점을 들며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쟁력을 갖춘 유력한 AI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김창욱 MD파트너는 "미국이 선도하는 AI 모델을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 분야는 일찌감치 관세협상 카드로 지목됐다. 15일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함정 노후화와 보수 및 수리, 건조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함정, 항공기, 탄약이 유사시 전력 대응에 충분하지 않고 노후함정의 정비 수요 때문에 조선소 공간이 잠식돼 신규함정 건조까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과 선박 수출, 보수·수리·정비(MRO) 협력은 전시에 미국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빠르게 전투함을 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평시에는 미국 조선소의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원은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하려면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은 미국産 선박만 운송 가능하도록 규정한 존스법(Jones Act)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상무는 "30년간 364척의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美 해군의 계획은 현재 건조 역량을 보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조선 분야의 韓·美 협력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는 LNG 對美 수입 확대와 원전 협력 강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었지만 유럽이 對美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자 LNG 사용량을 줄이면서 미국의 LNG는 과잉 상태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요한 거래대상국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주요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및 무역제재를 시행하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EU는 미국의 첫 협상 대상이었지만,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일본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본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만나 큰 영광"이라며 "큰 진전(Big Process)"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17일(현지시간) "멕시코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각국과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韓·美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韓·美 품목번호 연계표를 4월 18일 공개했다.

미국정부는 3월 27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발표했다. 부과 시점은 자동차는 4월 3일 발효됐으며, 자동차부품은 5월 3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지난 4월 2일 수입자를 위한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자동차(17개), 자동차부품(130개)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번호(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공개했다.

하지만 미국 기준의 HTS로는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 Code)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함으로써, 對美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연계표를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운영 등 對美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3월 12일 발효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연계표도 공개했다. 해당 품목연계표 발표가 다소 시일이 소요된 데에는 4월 4일 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발표에 따라 물품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추가된 품목번호는 HSK 기준 5개로 제2203.00-0000호·제2203.00-0000호(함량과세), 제7612.90-1000호·제7612.90-9010호·제7612.90-9020호(25%)다.

이번에 관세청이 공개한 품목번호 연계표는 본지 부록(57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올 1분기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치 기록

美·EU·中 등 주요 수출국서 안전·환경 관련 규제 증가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 주요 3대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환경규제가 증가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 13일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334건으로 분기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술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의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20%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안전과 환경규제에 관련된 사항이다.**

1분기에 WTO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년 동기 29.4% 급증한 132건을 통보했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등 주로 안전규제와 에너지효율규제 강화 건이었으며,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함에 따라 23.4% 증가한 79건을 통보했다.

EU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차와 대형차의 형식인증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인해 2배 급증한 28건이었다.

● 1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단위 : 건, %) ●

10대 수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베트남	대만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024.1분기	102	64	14	13	22	6	4	2	1	0
2025.1분기	**132**	**79**	**28**	**16**	**15**	**10**	**3**	**3**	**0**	**0**
증감률	29.4	23.4	100	23.1	△31.8	66.7	△25	50	△100	0

한편 국표원은 베트남이 지난 3월 발표한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이 6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업계는 새로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전기자동차 충전장비에 대한 기술규정은 전기차 충전장비에 대한 안전, 통신, 라벨링 등의 기술요건과 적합성 인증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4월 25일까지 TBT종합지원센터(KnowTBT.kr)로 보내면 된다.

| 하구현 기자 |

철강·합판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막는다

제조국·공급자 세탁, 저가신고 등 100일간 특별 점검

세관 당국이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된 통상정책으로 인해 對美 수출이 어려워진 국가에서 한국 시장을 우회수출지로 이용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총 25개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란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주성준 변호사는 4월 15일 관련 뉴스레터를 통해 "美·中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 및 소비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對미국 판로가 막힌 국가들의 제품 수출을 늘리기 위한 밀어내기식 저가수출로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관세청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로 적발된 사례로 중국산 H형강을 취급하는 업체가 물품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 수입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 원(덤핑방지관세율 28.23%)을 포탈한 경우가 있었다.

일본産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취급하는 업체는 덤핑방지관세율 15.39%에 해당하는 물품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번으로 수입신고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 등 약 2억 7,000만원 추징당했다.

관세청은 집중 점검을 위해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으로 구성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큰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주성준 변호사는 "기업은 예전부터 지속해서 거래해 오던 업체로부터 수입하던 물품도 수입하는 물품의 정확한 제조업체와 생산지, 유통경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라며,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정보 공유,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됐다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전화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모바일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밀수 신고 > 신고하기)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품목(22건, 15개국) ●

연번	품목명	품목	대상국	관세율(%)
1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제철/금속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7.17~25.82
2	부틸글리콜에테르	화학	사우디아라비아	43.58
3	FDY	섬유	중국	3.95~10.91
4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옵셋 인쇄판, 더블레이어 제품)	기타	중국	3.60~7.61
5	폴리아미드 필름	화학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4.90~28.60
6	이음매 없는 동관	제철/금속	중국, 베트남	9.98~18.12
7	수산화알루미늄	제철/금속	중국, 호주	13.99~37.96
8	백시멘트	유리/도자	이집트	60.83
9	PET 수지	화학	중국	7.00~7.98
10	OPP필름	화학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2.15~25.04
11	H형강	제철/금속	중국	28.23~32.72
12	인쇄제판용평면모양 사진 플레이트 (옵셋 인쇄판)	기타	중국	8.78~10.32
13	PET필름	화학	대만,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3.19~60.95
14	플로트 판유리	유리/도자	중국	36.01
15	부틸글리콜에테르	화학	미국, 프랑스	20.10~25.00
16	PET필름	화학	중국, 인도	2.20~36.98
17	페로실리코망간	제철/금속	베트남, 인도	2.30~11.04
18	도공인쇄용지	종이/목재	일본, 중국, 핀란드	8.22~16.23
19	합판	종이/목재	말레이시아	4.73~38.10
20	합판	종이/목재	중국	3.30~27.21
21	침엽수 합판	종이/목재	중국	7.15
22	합판	종이/목재	베트남	9.78~31.28

※ 1·6·11은 가격약속 적용 품목(출처 : 관세청)

●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품목(3건, 3개국) ●

연번	품목명	품목	대상국	관세율(%)
1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제철/금속	베트남	3.66~11.37
2	석유수지	화학	중국, 대만	4.45~18.52
3	중국産 스테인리스 후판	제철/금속	중국	21.62

출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면 개편 ··· 수입신고 2.5배 빨라진다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신규 유니패스(UNI-PASS)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속도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023년 5월부터 '관세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전면 교체 및 전환 사업'에 착수해 신규 유니패스(UNI-PASS)가 성공적으로 개통했고 4월 15일로 개통 한 달째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총 1,0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했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에 큰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마약 등 위해물품 선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최신 첨단기술을 관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관세행정에서의 첨단기술 활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수입신고서 자동처리 속도는 기존 24.1초에서 9.2초로 2.5배 빨라졌다. 수출신고서 처리 속도는 1.8배, 환급신청서 처리 속도는 1.6배 빨라졌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동시 처리 능력도 3배 증가하면서 화물통관진행정보 등 관세청이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분당 서비스(정보제공) 가능 건수가 기존 10만 건에서 신규 유니패스 개통 이후 30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 성능도 2.7배 개선되면서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의 결합 및 추출도 용이해져 밀수, 불법 무역, 관세 포탈 등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 분석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포장 쌀, 검역요건 없이 뉴질랜드 수출 가능해져

한국 쌀의 뉴질랜드 수출길이 보다 편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수입 검역이나 훈증소독을 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다.

검역본부는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 뒤 바로 포장되기에 병해충 유입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2023년부터 뉴질랜드와 검역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국산 소포장 쌀 검역요건 완화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소매 목적의 국산 소포장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현재 국산 쌀은 뉴질랜드를 포함해 약 48개국에 수출된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국산 쌀은 맛 좋은 고품질 쌀로 평가받으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수출량은 2022년 4톤에서 2024년 137톤까지 늘었다.

| 김성은 기자 |

해외인증 설명회, 전국 순회 개최 시작

지역별 주력 수출 품목·기업 수요 반영한 권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

정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애로를 듣고 해소를 지원하는 해외인증 설명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기업 인증 관련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많은 기업이 인증정보 부족, 대응역량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의 관세 강화 등으로 인해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올해 설명회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권역의 인증 동향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서울에서 4월 15일 개최된 수도권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 문의가 많은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의 최신 인증 동향, 심사절차, 서류 작성 등 실무 중심의 정보와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했다. 사전 신청기업에는 해외인증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도 지원됐다.

올해 해외인증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5월 8일), 대구·경북권(6월 4일), 부산·울산·경남권(6월 25일), 전라권(7월 16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IT·전기전자, 섬유, 기계·조선, 화학물질 등 지역별 주력 수출 품목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권역별 맞춤형 인증정보가 제공된다.

| 하구현 기자 |

● 권역별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 일정 ●

구분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전라권
일정	5월 8일(목) 10:00~16:00	6월 4일(수) 10:00~16:00	6월 25일(수) 10:00~16:00	7월 16일(수) 10:00~16:00
장소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 (3층)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 (4층)	부산무역회관 대회의실 (6층)	광주무역회관 회의실 (12층)
업종	전기전자·로봇	전기전자· 섬유의류	조선·기계	식품·화장품· 화학물질

공항·해상 해외 밀반입 등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밀반입, 국내 유통,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60일간 고강도 차단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6월 15일까지 60일간 전방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부터 국내 유통, 의료용 오남용까지 전 단계를 겨냥한 고강도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4월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외국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이 이뤄진다.

먼저 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우범국가·개인·화물내역 등 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 공유하고, 인천국제공항에만 설치된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가 구비된 전용검사실을 추가로 설치해 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해상을 경유해 밀반입되는 경우도 집중 단속한다. 최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대량 적발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한 선저 및 선내 합동 진입검사도 진행한다.

검찰청은 국경 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도록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범죄 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태국과 함께 태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 해상화물에 대한 합동선별 및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 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도 강화한다. 또한 불법 의약품 위반사범이 2022년 24명에서 2023년 58명, 2023년 252명으로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334% 증가율을 보였다. 불법의약품 적발중량은 2022년 2.7kg에서 2023년 22.8kg(740% 증가), 2024년 37.7kg(65% 증가)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 보완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농업부터 우주·지식재산까지" 산업별 유망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중기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8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

4월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사업 모델의 현지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과 해외 진출 자금을 지원해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범부처가 협업해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관기관(부처)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축산식품부)이 선정됨에 따라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농업기술(푸드·애그테크), 농업생명과학(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금융·투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교통부)으로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출을 돕는다. 도이치반, MS,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협업, 현지 창업 생태계와의 교류를 추진한다.

올해 신규로 참여하는 부처도 있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우주청)는 우주 분야 창업기업의 프랑스 진출을, 한국특허정보원(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기반 딥테크(DeepTech) 창업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에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 2025년 선정 주관기관과 지원 산업 분야 ●

구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교육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환경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아프리카재단 (외교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우주청)
국가	싱가포르	독일, 핀란드	미국	독일	미국	미국	남아공, 이집트	프랑스
산업 분야	푸드테크, 에그테크, 그린바이오	국토교통	서비스플랫폼,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기후테크	딥테크 (IP Based)	에듀테크	기후테크, 에이징테크	우주

한편,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140개사를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 부처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범부처가 협업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해운물류 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가동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해양수산부는 4월 16일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했다. 민·관·연이 함께하는 비상대응반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美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복관세 조치가 잇따르는 등 통상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이에 각 유관기관 간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물류 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대응반에는 해수부를 총괄로 한국해운협회가 해운팀을 맡고, 4개 항만공사가 항만물류팀을, K-물류 태스크포스(T/F)팀이 국제물류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동향분석팀을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금융지원팀을 맡았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해수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최한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물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해수부는 민·관·연 합동의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해운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SURE, iM뱅크와 손잡고 수출 中企 맞춤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iM뱅크와 함께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은행의 기금 출연과 K-SURE의 무역보험·보증 우대지원을 결합한 민간·공공부문 협력 신상품으로, K-SURE는 은행 추천기업에 ▲지원한도 최대 2배 우대, ▲보증비율 상향(90%→95%),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을 지원하고, iM뱅크는 ▲대출금리 인하,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기존 무역금융보다 높은 한도를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출 中企에 약 8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인재개발원, 품목분류 주제로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관세인재개발원은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열었다. 초청 대상은 방글라데시와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등 8개국이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열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참가자들은 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높였다. 또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경남 진주의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았다.

AMRO, 2025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ASEAN+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4월 15일(현지시간) 2025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일본·중국과 ASEAN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ASEAN+3 지역은 견고한 국내 소비·투자와 함께, 반도체·관광 산업 등 대외수요 개선에 힘입어 2025년 4.2%, 2026년 4.1% 성장하며 4%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경우 2025년 1.6%, 2026년 1.9% 성장이 예상됐다.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는 역내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그밖에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긴축, 주요 경제권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급등이 단기 하방요인으로 꼽혔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AMRO 홈페이지(www.amro-asi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특허청, 기술보호·경제안보 협력 의지 다져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4월 17일 '제3차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해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활용한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양 부처는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건수가 10여 건에 달하고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23조 원에 이르는 등 기술유출 위협이 심각해져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특허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 첨단기술 수출통제, 지식재산 규범 정립 등 분야에서 산업부의 법·제도 운영 경험과 특허청의 정보·분석 역량이 결합되면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완기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활용 및 견고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략물자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산업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현의 워싱턴 통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며 다시금 'America First'를 외치고 있다.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은 국제 경제와 통상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현재 워싱턴 D.C.에서 연수 중인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파트너 변호사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기조와 정책 방향을 연재 형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미국 신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
WTO 다자주의 이제 끝인가



박 주 현 |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파트너 변호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주요 무역 상대국에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과거 1기 때 특정국(중국)을 대상으로 했던 고관세 조치와 대비해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해당 수입품의 미국 내 시장 가격을 상승시켜 동종의 미국 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비교 우위에 둬 소비자들로 하여금 미국産 제품을 선택하게 하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미국 신행정부는 외국 기업에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세는 0%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해 궁극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관련 일련의 조치를 간략히 정리하고 **그 배경으로서 미국 신행정부의 무역 정책의 목표 및 관세 조치들의 합법성 및 지속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미국 무역 정책의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백악관, 무차별적 관세 부과 → 90일 유예 조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발동해 2025. 4. 5.부터 대부분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2025. 4. 9.부터 크고 지속적인 미국 무역적자에 기여하는 국가에 추가 '상호(reciprocal)'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1)]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3.3%)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보다 높은 MFN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2)]

신행정부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대외무역과 관련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상품에 대한 외국 생산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미국 공급망을 지정학적 혼란과 공급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미국 경제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경제적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평가하고 모든 무역 파트너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물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 무역 흐름의 균형을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자국 시장에 수입되는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미국産 제품에 대한 관세를 84%로 인상했고, 유럽연합(EU)은 미국産 기계, 항공기 부품, 농산물 등의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 4. 10. 미국은 자신들의 4. 2.자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무역 관련 협상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90일간 이미 발표된 상호관세를 유예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유예 조치에 중국에 대한 관세, 모든 상품에 대한 10% 관세(소위, 기준 관세), 그리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3)] 구체적으로 미국의 주식 시장도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당면했고,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

1)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Executive Orders April 2, 2025(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2) 구체적으로 미국 상품에 대해 브라질은 11.2%, 중국은 7.5%, 유럽연합은 5%, 인도는 17%, 베트남은 9.4%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declares-national-emergency-to-increase-our-competitive-edge-protect-our-sovereignty-and-strengthen-our-national-and-economic-security).

3) 'Tariff turmoil in markets', April 10, 2025, Robin Brooks, The Brookings Institution(www.brookings.edu/articles/tariff-turmoil-in-markets)

Ⅱ.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전략의 목표

관세란 한 국가의 세관 당국이 외국産 상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일반적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납부 책임은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있다. 관세 납부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 상품 가격에 반영되므로 고율의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단기적인 고통은 장기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4)]

이처럼 미국 내 물가에 악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고율의 관세 정책을 고수하는 것일까?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무역 적자 해소 및 미국 내 제조업 부흥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공연히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는 주요 교역국 대부분과 무역하는 방식에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러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현재의 무역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외국産 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세계 여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곧 많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미국 내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2.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 확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실제로 주요 무역교역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스콧 베센트 美 재무부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무역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5)]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2025. 4. 2.자 관세 부과 발표 이후 60여 개국이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 개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90일간 해당 조치를 유예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

4) 'Short-term pain will lead to long-term gain, says Trump. Really?', The Economist, April 14, 2025(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5/04/14/short-term-pain-will-lead-to-long-term-gain-says-trump-really)

5) Trump tariffs are "negotiating strategy," Treasury chief Scott Bessent suggests as pause announced, April 9, 2025, CBS News(www.cbsnews.com/news/trump-tariffs-negotiating-strategy-treasury-secretary-scott-bessent-pause)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고는 며칠 후 이를 보류하거나 유예해 왔다. 관세 부과 조치가 공격적일수록 무역 상대국들이 입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니, 조치의 강도가 높을수록 상대국들은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기저에 있다. 나아가 세계에서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수입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대국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미국 행정부 관세 조치의 합법성 및 지속가능성

미국은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관세를 포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오직 상원과 하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특정 상황에서 의회의 조치 없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34년 제정된 상호무역협정법(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는 1962년 무역확장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을 통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자간 무역 협상을 할 권리와 이와 관련한 관세율을 조정할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외국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나 기타 무역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제232조).[6]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외국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서 미국이 당면한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이러한 행정부의 권한은 대체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주로 사용됐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공격적인 관세 조치의 배경에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존재함에 따라 위 IEEPA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피건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조치는 현행 미국의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미국 내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저지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며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사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발동할 근거인 '국가 안보 위협' 또는 '비상경제 사태'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관련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점에서 미국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행정부 권한 발동의 근거가 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안보 위기' 또는 '비상사태'가 존재한다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매우 자제했는데, 이러한 경향도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6)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1, 2022(www.congress.gov/crs-product/IF10667)

한편, 2025. 4. 현재, 미국의 각급 법원에서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의 위법성 관련한 소가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2025. 4. 3. 새로운 시민 자유연합(New Civil Liberties Alliance)이라는 단체는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회사를 대표해 플로리다 북부 지방법원에,[7] 2025. 4. 14.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라는 단체는 미국의 기업을 대표해 국제무역법원(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8]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행정부의 권한 범위 밖이고 무역적자가 곧 비상사태를 구성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관세 조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향후 이 소송들의 진행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Ⅳ. 향후 미국 행정부 무역 정책의 방향

미국이 촉발한 새로운 무역 질서는 다자주의의 쇠퇴를 야기할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1995년 출범한 WTO가 지향했던 '다자주의'는 이제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무역 상대국들의 높은 관세를 타개하는 방법은 엄격한 자유무역 규칙을 다자적 차원에서 부과할 강력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WTO가 출범, '다자주의의 왕관 보석(crown jewel of multilateralism)'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對중국 무역적자,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다자협상의 교착 등의 사유로 미국 정부는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통해 자국 및 자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관인 항소기구의 항소위원 임명을 저지하면서 무역 분쟁의 다자간 해결 시스템을 정지시켰다.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트럼프 행정부는 막강한 자국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적인 무역 협상이 미국에 더 큰 이익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1기 집권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을 탈퇴하면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무역 정책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일련의 관세 조치는 비즈니스맨 출신인 그의 전형적인 협상 기술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는 "판을 흔들어 자신의 스타일로 새로운 판을 짜고, 다양한 레버리지를 만들어 본인이 주도할 여지를 만들고, 최고위층과의 담판을 통해 단번에 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7) Florida stationery company files first lawsuit challenging Trump tariffs, Guardian US, April 4, 2025 (www.theguardian.com/us-news/2025/apr/04/florida-lawsuit-trump-tariffs)
8) U.S. businesses sue to block Trump tariffs, say trade deficits are not an emergency, CNBC, April 14, 2025 (www.cnbc.com/2025/04/14/us-businesses-sue-to-block-trump-tariffs-say-trade-deficits-are-not-an-emergency.html)

결국, 미국 신행정부는 각 무역 상대국별로 해당 국가의 국내 시장, 해당 국가의 미국으로의 수출 품목 및 물량,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의 국내 산업에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화된 양자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Ⅴ.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미국 신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당면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과 관련된 기존 및 추후 진행될 계약을 모두 검토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에 타격을 받는 계약을 먼저 선별한다.

둘째, 해당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 **관세 납부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확인한다.** 신규 계약 체결의 경우 관세 납부 책임을 상대방에게 할당하는 조항을 삽입해 위험(관세 폭등에 따른 사업상의 불확실성)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을 고려한다.

셋째, 계약 내용 중 관세 폭등과 같은 불측(예상할 수 없는)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된 조항(가령, 사정 변경에 따른 가격 재협상 조항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아가 해당 조항이 이번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넷째, 현재 사업 모델을 재평가하고 관세가 낮게 책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공급망을 수정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거래 시 원산지(포괄)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
질문	중국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 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내국 원산지증명서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 공급자가 제공하는 국내법령에 의거 규정된 서식입니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포괄)확인서상 자유무역협정 명칭은 '한·중',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충족', 원산지를 '중국(CN)'으로 기재해 발급 가능합니다.

2. 원산지(포괄)확인서

(1) 개요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적용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이 필요하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① 원재료에 관한 정보, ② 제조가공에 관한 정보, ③ (필요한 경우)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정보다. 그리고 이 정보를 서류로 작성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원산지증빙자료에는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가 있다. 다만 국내 거래 과정에서 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KR)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사용된다.

(2)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FTA 원산지 판정 과정에서 활용되는데, 완제품이나 원재료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제조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원산지증명서와 매우 유사하며, 국제 거래가 아닌 국내 거래에서 활용되는 서류라는 특징이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그 자체만으로는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됐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가 FTA 목적상 한국산(또는 역내산)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협정에 따른 FTA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 한국산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만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국내 거래와 관련된 FTA 활용에서의 중요한 서류인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서식으로 해당 규정의 별지 제5호 서식에 해당한다.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불리기도 하는데 원산지확인서가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내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확인 기간 설정은 공급자의 선택사항이다. 원산지포괄확인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제8번란에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하며, 반대로 제12번란에 원산지포괄확인 기간을 적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로서 수량 및 단위를 적지 않는 사례가 많다.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용도는 대표적으로 제조자가 납품하는 ① 완제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확인 용도와 ② 유통사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 용도(완제품 또는 원재료)가 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며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FTA 활용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수다. 수출자는 생산자가 발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없이는 해당 물품이 FTA 목적상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제품 A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제품 A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원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작성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수출제품의 생산자(수출자)가 원재료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제품 A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이고, 제품 A와 원재료 a의 4단위 HS Code가 같은 경우 제품 A가 한국산 물품이 되려면 해당 물품과 HS Code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 a'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이 원재료인지 제품인지 또는 거래 단계의 복잡성 여부와 상관 없이 FTA 목적상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발급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작성하거나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 또는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사도 작성 가능하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납품되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로 일반적으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생산자가 작성한다. 그러나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납품하면서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곧바로 제조 또는 수출에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다시 한번 국내 납품을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태로 물품을 유통하는 유통사도 생산자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원산지(포괄)확인서와 다른 원산지증빙서류와의 관계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산지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원산지증명서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사용 가능 여부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법령인 「FTA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서 그 자체만으로 특혜관세 적용 혜택을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에 반해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근거로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발급(작성)됐다면 수입국에서의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즉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 거래에서 원산지를 증명할 때 사용하고, 원산지증명서는 국제 거래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절차를 진행하나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산지를 확인한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서식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로 양식이 상이하지만, 어떤 협정이든 「FTA관세법」상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원산지소명서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완제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로는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떻게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원산지증명서도 마찬가지인데,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각각 국내·국외용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포괄)확인서나 원산지증명서의 세부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가 원산지소명서에 해당한다. 원산지소명서에는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포괄)확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조가공 정보나 원재료 내역 관련 정보가 기재된다. 대외용 서류로서 존재하는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포괄)확인서에는 관련 정보를 작성할 수 없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및 원산지조사(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로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4) 원산지(포괄)확인서 추가 고려 사항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때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존재한다. 관세청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관해 답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청에서는 보세공장은 관세 부과의 목적에 따른 「관세법」에 따라서 외국으로 보지만, 원산지(물품 생산 또는 가공)를 고려할 때는 우리나라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시 원산지재료임을 확인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나 정보를 통해 공급받은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 작성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각각 다른 법인이지만 대표자는 동일한 경우, 타 법인 소속직원이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서명권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해당 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타 법인 소속직원은 해당 서류의 서명권자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 이유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민법」 제33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바(「민법」 제34조), 법인은 각 법인별로 법인격이 있는 것이며,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해당 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타 법인 소속직원이 해당 서류의 서명권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공급된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세청에서는 협정 발효일 이후 수출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협정 발효일 이전에 공급했다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협정 발효일 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가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경과 후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작성해 제공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날(공급받은 날)'이 포괄확인 기간 내에 있으면 된다"고 답변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은 중국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 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산 원재료 또는 완제품에 대한 국내 공급 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물품을 수입하고 이를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원산지(사례에서는 중국)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 되는 것이다.

(2) 누적기준의 활용

수입물품을 그대로 납품할 때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누적(Cumulation)기준은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져와 체약상대국에서 창출한 요소를 수출국에서 창출된 요소에 쌓아 합산한다는 의미다. 상대 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보는 것을 '재료누적'이라고 부르고, 외국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공정누적'이라고 부른다.

누적기준은 역내에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1국 내 가공원칙을 완화하는 기준이며 결국 상대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나 공정 등을 누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한국산 원산지 재료나 공정 등에 관한 것을 누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나 공정에 관한 입증은 재료누적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공정과 같은 입증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을 통해서 진행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누적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

각 협정에서 누적에 관한 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으나 FTA 실무상 재료누적의 활용은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한·중 FTA 누적을 활용하기 위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고 한·ASEAN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 될 것이다.

다만 물품을 수입해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 수입자이자 공급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에는 외국의 수출자 정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의 가격정보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 시 원산지 관련 입증서류인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이다.

(3) 질문 & 답변 사례의 해석

국내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누적적용 시 입증서류는 원산지증명서가 되지만, 수입물품이 바로 제조 등에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납품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원산지증빙서류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내국 원산지증명서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 공급자가 제공하는 국내법령에 의거 규정된 서식이며, 한·중 FTA에 따라 중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포괄)확인서상 자유무역협정 명칭은 '한·중',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충족', 원산지를 '중국(CN)'으로 기재해 발급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 공급자가 제공하는 국내 법령에 의거 규정된 서식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서식은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이 이뤄진 물품에 대한 한국산 증빙자료로 사용되지만, 예외적으로 ① 수입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고, ② 해당 수입물품이 원상태로 국내 공급되는 경우 해당 협정 대상국가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국내 공급 시에는 일반적인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내용과 작성 방법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 시 유의할 내용은 제5번란(자유무역협정 명칭), 제9번란(원산지 결정기준), 제10번란(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제11번란(원산지), 제12번란(원산지포괄확인 기간)이다.

다만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WO(완전생산기준), WP(원산지재료생산기준), PSR(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OP(역외가공기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SR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포괄하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상 선택기준(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선택 가능)이 규정된 경우 제9번란(원산지 결정기준)을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다른 관세청 사례를 참고하면 한·EU FTA상 원산지로 증명된 수입물품을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방법을 질의한 건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은 알지 못하면 공란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안내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일반적으로 국내산 입증에 활용되는 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누적기준의 증빙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국내 공급자(해외 수입자 등)은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

를 수취한 상태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중 FTA에 따라 중국산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상태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돼야 한다. 만약 물품을 수입해 해당 수입자가 그대로 제조공정에 투입한다면 수입 시 수취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해 누적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해당 협정에 대해서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한다면 한·중 FTA가 아닌 다른 협정(예를 들어 한·ASEAN FTA)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외국산 수입물품을 그대로 납품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실무상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활용 대상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만약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커버링테이프의 HS Code

인테리어에 많이 쓰이는 비닐과 결합된 종이테이프인 커버링테이프(마스킹 필름)의 품목분류가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의 '기타'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3926.90-9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유사한 국내 품목분류 사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결정 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커버링테이프(1,500 × 20㎜)
물품 설명	Polyethylene 필름의 일면 가장자리에 지제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하고 필름을 접어 롤상으로 감은 것

환급 / 해외 직구 물품 환불 시 관세 환급

해외 직구한 물건이 제품 없이 빈 봉투만 배달돼 판매처에 환불 신청한 후 봉투는 버렸습니다. 이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라 "해외 직구 물품의 환급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래의 판매자에게 반송한 경우"에 한해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품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200만원 이하라면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해외로 해당 물품을 반출한 운송장 및 증빙서류만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에서 "6개월 이내 원래의 판매자에게 반송한 경우"란 우리나라에서 반출돼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로 반출된 운송장이 필수확인 서류입니다. 현행법으로는 해당 물건이 국내에서 반출됐다는 해당 운송장이 없을 경우 외국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

인할 수 없어 관세 환급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96조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제1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 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수입 /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항목에 'DE-A-Y-D'란 표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1의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46번 항목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국(생산, 제조국) 국가부호, 원산지 결정기준부호, 원산지 표시 유무, 원산지 표시 방법을 차례로 기재합니다.

국가부호 DE : 독일(무역통계부호 163페이지)
원산지 결정기준부호 A : 완전생산기준(무역통계부호 129페이지)
원산지 표시 유무 Y : (원산지표시) 현품 및 포장(무역통계부호 129페이지)
원산지 표시 방법 D : 직제라벨, 스티카(무역통계부호 129페이지)

참고로 무역통계부호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tradedata.go.kr) > 사용자지원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미용 주류에 대한 판례 해설

조 용 지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Ⅰ. 처분 경위 및 사건 경과

1. 원고의 수입신고

원고는 2017. 5. 30.부터 2022. 1. 11.까지 베트남 'B'(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RICE WIN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22건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품목번호 제2208.90-9000호, 주세 10%(2021년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주세 0%)로 신고했다(이하 위 22건의 수입신고를 '이 사건 신고'라 한다).

2. 주세 등 경정처분 및 불복

1) 피고는 2022. 5. 24. 원고에게, 과세전통지를 하려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신고 중 3건에 관해 주세 9,892,090원, 교육세 3,286,730원, 부가가치세 1,317,880원, 가산세 7,962,500원, 합계 22,459,20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19건에 관해 주세 177,080,570원, 교육세 58,395,460원, 부가가치세 23,547,580원, 가산세 86,326,410원, 합계 345,350,020원을 과세전통지했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22. 5. 25. 관세청장에게 위 과세전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3) 피고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2.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 중 나머지 19건에 관해 HSK 품목번호 제2206.00-2090호(주세 72%)로 변경하면서 주세 177,080,570원, 교육세 58,395,460원, 부가가치세 23,547,580원, 가산세 88,234,900원, 합계 347,348,51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경정 전 제2처분'이라 한다).

3. 피고의 경정 전 제2처분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

피고는 2023. 2. 20. 원고에게 경정 전 제2처분의 대상이 되는 나머지 19건 중 2021. 6. 14.부터 2022. 1. 11.까지 3건의 신고물품에 대해서는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의 규정상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종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 전 제2처분의 일부를 감액(합계 60,132,440원)해, 경정 전 제2처분은 주세 141,052,680원, 교육세 46,865,910

원, 부가가치세 18,791,840원, 가산세 80,505,640원, 합계 287,216,070원이 남게 됐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경정 전 제2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Ⅱ.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세의 부과 대상인 주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함유 이외에 '통상의 음료'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조미의 용도로 생산·판매되고 있어 '통상의 음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수입시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물품은 2017. 5. 30.부터 2021. 1. 29.까지 수입됐다.

나. 이 사건 처분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1) 원고는 2021. 12. 14. 이 사건 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원고의 위 신청은 중앙관세분석소의 성분분석[알코올분 14.5(v/v%), 산도 1.87, 비중 1.113, 불휘발분 36.3(g/100㎖)]을 거친 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전달됐다.

2) 원고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검토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이 쌀발효주 58.1%, 주정 6.8%, 설탕 35%, 캐러멜 0.1%로 구성돼 있다는 것과 제조공정상 발효과정을 거친다는 이 사건 거래처 작성의 자료를 제출했다(이후 원고는 4차례에 걸쳐 제조공정도를 수정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3)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2022. 2. 25. 중앙관세분석소에 "이 사건 물품은 밝은 황색의 단맛이 강한 액체물품으로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용이 가능한 음료이므로 「주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 제4호 라목(주세 72%)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4) 중앙관세분석소는 2022. 3. 4. 관세평가분류원에 "이 사건 물품을 HSK 품목번호 제2206.00-209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했다.

5)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은 쌀, 누룩, 효모, 물 등을 혼합, 발효시켜 만든 쌀발효주에 주정, 설탕 카라멜을 혼합, 조제한 기타 곡물 발효주이므로 HSK 품목번호 제2206.00-2090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다. 품목분류 재심사 결과

1) 원고는 2022. 4. 12.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했다.

2) 원고는 품목분류 재심사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제조공정도를 제출했는데, 세 번째 제출(2022. 8. 9.)한 공정도부터는 기존과 달리 발효 과정이 생략되고, 당화 과정이 추가됐으며 네 번째 제출한 제조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4번째 제출한 제조공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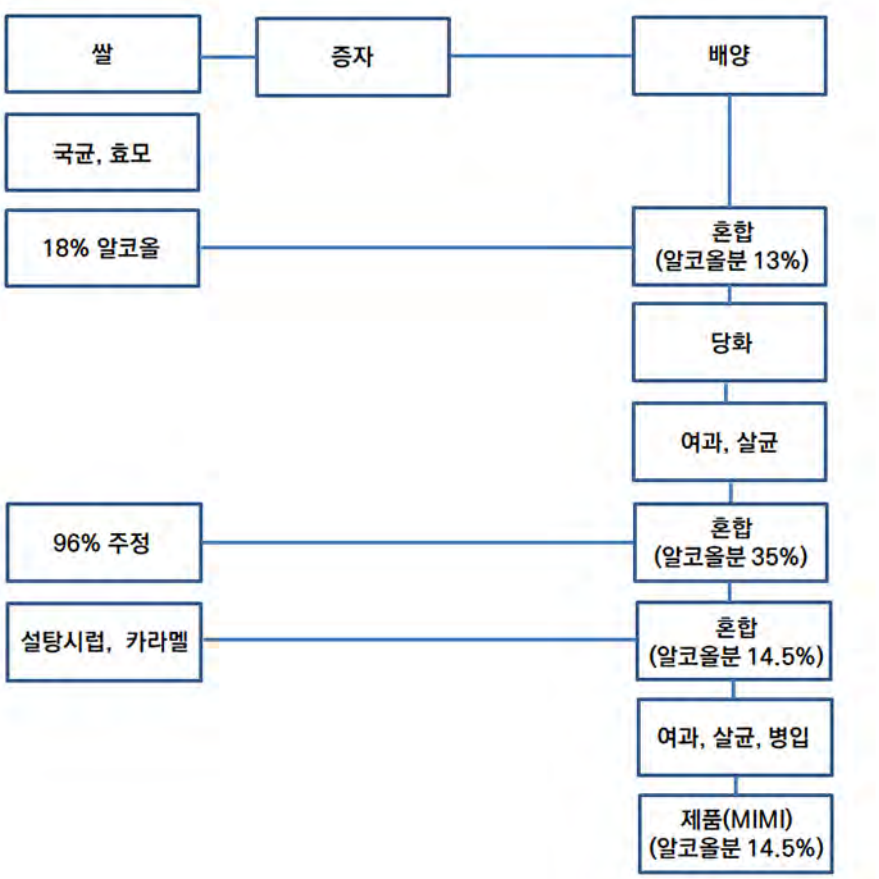

그리고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내용이 다른 원재료 및 성분표를 제출했다.

● 원고가 제출한 원재료 및 성분표 ●

(단위 : %)

구분	2022. 4. 12. 제출	2022. 5. 4. 제출	2022. 8. 9. 제출	2022. 9. 23. 제출
쌀	23.27	13.52	13.51	
물	76.5	44.45	44.46	35% 당화액 41.4
설탕 시럽		35	35	48.6
캐러멜		0.1	0.1	0.1
주정		6.8	6.8	
누룩	0.14	0.08	0.081	
효모	0.09	0.05	0.05	
기타	위 재료를 100%로 한 쌀발효주(56.1%), 주정(6.80%), 설탕(35%), 캐러멜(0.1%)을 배합			35% 당화액은 13% 당화액(64%)과 96%의 주정(36%)을 배합한 것이고, 13% 당화액(1ℓ)은 찐쌀 5.25㎏, 누룩 0.0014㎏, 효모 0.0009㎏, 18% 주정 0.869㎏을 배합한 것임.

3)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2022. 10. 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 사건 물품의 제조공정 과정의 반제품인 당화액 시료를 분석한 결과 n-Propanol, I-Butanol, I-Amyl Alcohol 등 고급알코올이 다량 검출됨에 따라 발효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배합비율에 따른 알코올 수치가 사실과 달라 배합비율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과 동일하게 "이 사건 물품은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 제4호 라목(주세 72%)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은 알코올의 용량이 0.5%(v/v)를 초과하고, 일반적으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됐거나 조미료로서 특성을 갖는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심사 결과와 동일하게 "이 사건 물품을 HSK 품목번호 제2206.00-209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舊「주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제3조 제3호에서 '알코올분'이라 함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02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 연구개발부 소속 연구원 D가 10명의 식품연구원이 참여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물품에 관해 "시럽을 먹는 듯한 단맛과 강한 알코올취와 신맛으로 바로 음용은 어려우며 음식의 잡내와 비린내를 잡는 첨가물로서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실, 이 사건 물품에 관해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천연 조미료(맛술)'로 소개하고 있고, 마트에서 '조미료 코너'에 진열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서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舊「주세법」이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20. 12. 29. 법률 제17762호로 전부개정된「주세법」제2조 제1호 나목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서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주세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舊「주세법」에 따라 주류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 舊「주세법」에는 위와 같은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에 대한 제외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제4조 제1항에서 주류의 종류를 주정(제1호), 발효주류(제2호), 증류주류(제3호), 기타주류(제4호)로 구분하면서 제2항에서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4호(기타주류) 라목은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주정) 또는 제3호(증류주주)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발효주류)에 따른 주류 외의 것"을 기타주류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물품은 쌀발효주 56% 내지 58%, 주정 6.8%, 설탕 35%, 캐러멜 0.1% 등으로 구성돼 있고, 알코올분은 14.5%로 알코올분 1도 이상에 해당해 舊「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라목의 주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당화액 시료를 분석한 결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급알코올이 검출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배합비율에 따른 알코올 수치가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가 품목분류 재심사 과정에서 네 번째(2022. 9. 23.)로 제출한 공정도, 원재료 및 성분표(갑 제7호증 등)는 신뢰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와 배합비율에 비춰 살피건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23. 1. 27.자 회신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물품은 일반적으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미료로서 특성을 갖는 첨가물이 함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밝은 황색의 단맛이 강한 액체물품으로서 음용이 가능한 음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 물품에는 설탕 35%, 캐러멜 0.1%가 함유돼 있어 다소 단맛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자체로 혹은 적정한 양의 물로 희석할 경우 취기가 오를 정도로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이와 같은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수입 시 이 사건 물품을 주류로 신고했고,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포장용기에 "⑲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경고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갑 제3호증)했는바, 이 사건 물품이 주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물품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舊「주세법」이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Ⅲ. 결어

주종에 따라 주세율의 차이가 큰 주류는 저세율의 물품으로 신고하려는 유인이 큰 품목 중 하나다. 이 사건 물품은 「주세법」[1]상 기타주류에 속하는 품목으로, 피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주세법」 별표 제4호 라목[2]에 속하는 발효주로 주세 72%가 적용된다는 입장이었고, 원고는

1) 2021년「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미용 주류'가 주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2년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 '「주세법」 별표 제4호 다목에 따른 주류'에 속하는 조미식품이어야 '주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주세법 시행령」 개정

전심 절차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발효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에서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라 판시한 대법원판결을 들며, 주세 부과 대상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임을 주장했고, 이 사건 물품은 조미식품의 용도로 사용되며 천연조미료(맛술)로 판매되고 있음을 들어 통상의 음료로 볼 수 없어 주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주장했다.

「주세법」 별표 제4호	분류 물품	비고
다목	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원고의 주장
라목	발효주류	피고의 주장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개정 「주세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돼 舊 「주세법」에 따라 주류 여부가 판단돼야 하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 주세 관련 소관부서의 전문적인 판단, 전심 절차에서 원고가 여러 차례 번복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의 사정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은 舊 「주세법」이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한다고 봐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이 「주세법」에 따른 주세 등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나, 이와 아울러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 해당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품목분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효에 의해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세포배양시스템(XDR Bioreactor)과 XDR-2000 PRO BAG의 품목분류
- 2024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심 난 섭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Ⅰ. 개요

세포는 모든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세포에 대한 연구는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졌다. 이번 호에서는 세포 배양에 사용되는 BAG의 품목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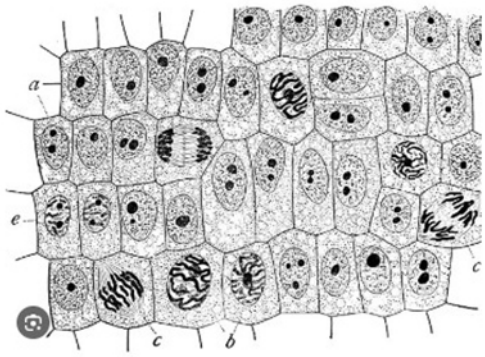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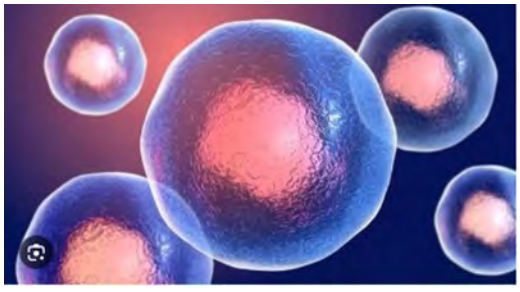

세포배양(cell culture)은 체외에서 세포를 성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조건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이다. 주로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세포를 대상으로 하며, 생명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세포배양은 세포 생리, 유전학, 약물 개발 등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단백질 생산이나 백신 개발에도 활용된다.

세포배양시스템(XDR Bioreactor)이란 세포를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장치와 기법의 집합체다. 이 시스템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온도, pH, 영양분, 산소 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세포가 체외에서도 정상적으로 성장하거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배양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① 세포 배양 배지, ② 적절한 양의 산소, 이산화탄소 및 질소, ③ 적정 온도, ④ 적절한 세포 배양 배지의 혼합(교반)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Vessel(Bioreactor 본체), Controller, I/O Panel, Bag(쟁점물품)으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세포배양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XDR-2000 PRO BAG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세포배양시스템과 그 구성품 BAG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세포배양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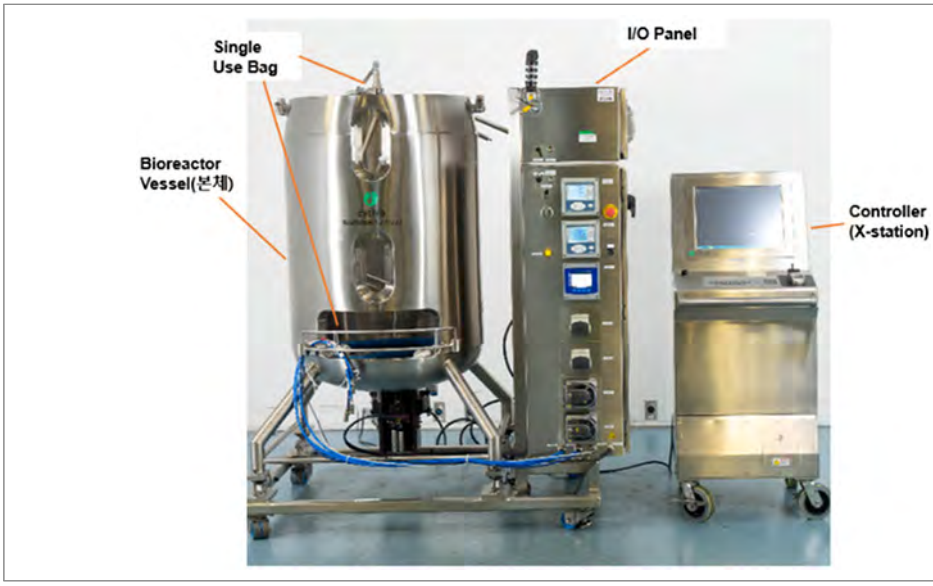

Ⅱ. 쟁점 사례

1) 쟁점물품 : 세포배양시스템(XDR Bioreactor)에 사용되는 일회용 Bag(XDR-2000 PRO B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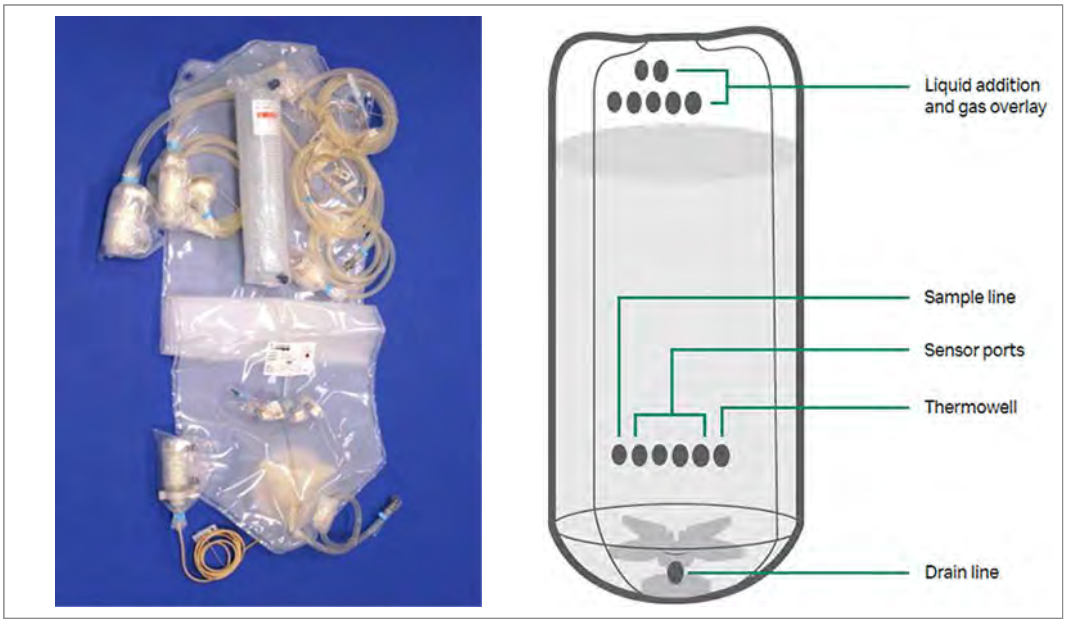

세포배양시스템(XDR Bioreactor)은 마그네틱 모터가 있는 Vessel*(Bioreactor 본체), Controller, I/O Panel, 일회용 Bag(질의물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Vessel 내부에 Bag을 결합해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적정온도, 교반, pH 및 용존산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 Vessel 외벽과 내벽 사이 공간에 적정온도의 물을 주입해 온도 조절

ㅇ 구성 요소

① (**Bag**) 세포 및 배양용 배지 용액 등이 충진되는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특정 형상의 Bag(일회용)

② (**Liquid addition / Gas overlay**) Bag에 배양 배지 및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포트, I/O 패널의 펌프에 연결돼 외부의 배지를 무균 주입

③ (**Impeller**) 날개(blade) 형태의 교반기로 Bag에 결합돼 있음.

④ (**Drain line**) 세포배양 과정이 끝난 후 배양액을 회수하는 라인

⑤ (**Ports**) pH, DO(용존산소), 온도 측정 및 배양에 필요한 가스 등의 주입 통로

2) 쟁점사항

본 물품은 세포배양시스템 모체의 품목분류에 따라 가열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의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봐 제8419.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세포배양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의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봐 제8479.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 제8419.90-9090호와 제8479.90-9090호 ●



Ⅲ.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논의 및 결정 사항

1) 제8419.90-9090호에 분류한다는 논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중략>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 물품은 세포배양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품으로서 완제품이 속하는 호에 분류되므로, 완제품인 ‘XDR Bioreactor’의 품목분류가 선행돼야 하며,

XDR Bioreactor의 공간적 구성을 고려하면 세포가 배양될 수 있는 공간(Vessel)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에 주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감지(sensing) 및 pH 조절, 교반 등은 부수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XDR Bioreactor는 관세율표 제8419호의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9.90-9090호에 분류한다.

2) 제8479.90-9090호에 분류한다는 논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중략>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 물품은 세포배양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품으로서 완제품이 속하는 호에 분류되므로, 완제품인 ‘XDR Bioreactor’의 품목분류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검토해 보면,

XDR Bioreactor는 세포가 배양될 수 있는 공간의 적정온도 유지, 감지(sensing) 및 pH 조절, 교반, 가스조절(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의 기능을 종합해 세포배양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단순 온도 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의 범주를 벗어나는 물품이다.

※ [참고] 유럽연합(EU)과 중국은 Bioreactor(바이오리액터)를 제8479호에 특게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한다.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세포배양'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제8479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한다.

Ⅳ.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제8479.90-9090호에 분류

1) 품목분류 Check Point

그간 국내 분류사례는 '세포배양시스템'에 대해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세포배양시스템은 세포를 배양하는 배양기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주 기능이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있다고 판단해 제8419.89-9090호에 분류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2024년 제5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XDR Bioreactor는 세포가 배양될 수 있는 공간의 적정온도 유지, 감지(sensing) 및 pH 조절, 교반, 가스조절(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의 기능을 종합해 '세포배양'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결정하고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 제8479.90-909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더불어 '세포배양시스템(Bioreactor)'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했다.

596. Bioreac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57호(2024. 12. 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물품 설명
- 세포 등 배양을 위한 발효조

ㅇ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90호
ㅇ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 사유
- 단순히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배양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이므로 제8479.89-9099호에 분류(2024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본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과 관련해서는 해외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세율표를 참고할 수 있다. 유럽연합과 중국에서는 Bioreactor를 제8479호에 특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상품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일된 상품분류를 한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 유럽연합 관세율표

8479	89	9760	- - - - 바이오 의약품 세포 배양용 생물 반응기 • 내부 표면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되어 있고, • 최대 15,000리터의 처리 용량, • "clean-in-process" 시스템 및/또는 전용 미디어 보관 용기와 결합 여부	- - - - Bioreactor for biopharmaceutical cell culture - having interior surface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and - with a process capacity up to 15 000 litres, -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a "clean-in-process" system and/or a dedicated paired media hold vessel

■ 중국 관세율표

8479	89	9952	바이오리액터	生物反应器

■ 세포배양기 BAG의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70	**검토서 번호**	0072024003949
시행일자	2024년 11월 19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79.90-9090호		
경합세번	제8419.90-9090호		
내용	제8479.90-9090호		
연도	2024년		
회	05		
품명	XDR-2000 PRO BAG ; 888-0081-C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세포배양시스템(XDR Bioreactor)에 사용되는 일회용 Bag으로 XDR Bioreactor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필수 구성품 - (용도) 세포배양을 위한 물리적 공간 및 환경 제공		

	ㅇ 주요 구성요소 - (Bag) 세포 및 배양용 배지 용액 등이 충진되는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특정 형상의 Bag(일회용) - (Liquid addition/Gas overlay) Bag에 배양 배지 및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포트, I/O 패널의 펌프에 연결돼 외부의 배지를 무균 주입함. - (Impeller) 날개(blade) 형태의 교반기로 Bag에 결합돼 있음. - (Drain line) 세포배양 과정이 끝난 후 배양액을 회수하는 라인 - (Ports) pH, DO(용존산소), 온도 측정 및 배양에 필요한 가스 등을 주입하기 위한 통로 등 ㅇ 세포배양시스템(XDR Bioreactor) 작동 원리 - XDR Bioreactor은 마그네틱 모터가 있는 Vessel* (Bioreactor 본체), Controller, I/O Panel, 일회용 Bag(질의물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Vessel 내부에 Bag을 결합해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 * Vessel 외벽과 내벽 사이 공간에 적정온도의 물을 주입해 온도 조절 ** 적정온도 유지, 교반, pH 및 용존산소량 등을 센싱 및 컨트롤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중략>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세포배양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품으로서 완제품이 속하는 호에 분류되므로 ‘XDR Bioreactor’의 품목분류가 선행돼야 하며, XDR Bioreactor는 세포가 배양될 수 있는 공간의 적정온도 유지, 감지(sensing) 및 pH 조절, 교반, 가스조절(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의 기능을 종합해 세포배양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단순 온도 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는 기기의 범주를 벗어남.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세포배양’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제8479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연관 키워드	XDR-2000 PRO BAG, 세포배양기 일회용 BAG, XDR Bioreactor
관련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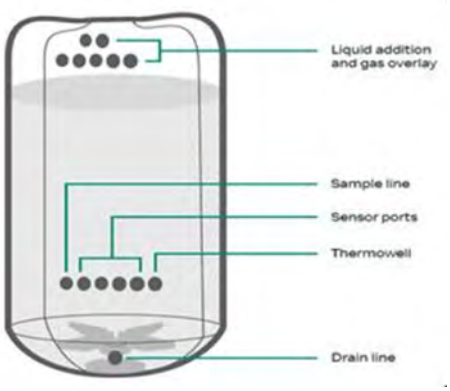

2) 품목분류 시사점

이와 같은 결정에서 우리가 깊이 고찰해야 하는 부분은 제16부 주 제3호의 '복합기계' 규정이다.

■ 제16부 주 제3호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제16부 총설

(VI)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와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부의 주 제3호)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다기능의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 밀링(milling)·보링(boring)·래핑(lapp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 공구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가 있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제8458호부터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조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이러한 복합기계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종이를 접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인쇄기계(제8443호) ; 이름이나 간단한 도안을 인쇄하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판지로 만든 상자 제조기계(제8441호) ;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와 결합된 공업용 로(爐)(제8417호나 제8514호) ; 보조적인 포장기계와 결합된 담배제조기(제8478호)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속에 결합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위에 장착되거나 동상(common base)·동일 프레임(common frame) 위나 동일 하우징(common housing)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된 것(fitted together to form a whole)으로 취급한다.

기계의 집합체(assemblies of machine)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同床)·동일 프레임·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않은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한다.

복합기계는 사용 중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베이스(base)·프레임(frame)이나 하우징(housing)에 바퀴가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다만, 그로 인하여 이 표의 특정 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물품(예 : 차량)의 성격을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

바닥(floor)·콘크리트로 만든 베이스(base)·벽·칸막이·천장 등은 기계나 장치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도 해당 기계나 장치를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同床 : common base)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돼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의 주 제3호에서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품목분류에서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 기계는 단일의 요소로 구성되는 경우는 없으며, 어떤 기능을 위해 여러 부품이나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흔히 구성 요소 중 주 기능에 따라 결정하면서 물품의 본질을 벗어나서 품목분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16부의 주 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 구성요소의 복합 여부보다는 기능의 복합성에 관점을 두면서 주기능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복합적 요소'와 '복합 물품'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복합적 요소'란 하나의 기능(예 : 세포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복합 물품'이란 인쇄, 팩스, 복사도 되는 복합기계가 대표적으로 복합 물품의 경우에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되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구성된 경우에는 그 기능에 따라 특정 호로 분류하며,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복합기계의 경우에는 주기능을 판단해 결정한다면 적정한 품목분류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낫또 분류 사례
- 2018년도 2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홍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스시, 우동, 라멘, 타코야키 등이 있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낫또'다. 낫또는 삶은 대두(大豆)에 낫또균을 가해 발효시킨 일본의 전통 식품이다.

낫또의 특징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독특한 냄새와 끈적한 점액질이다. 이 점액질은 바로 낫또키나제로, 낫또를 치댈수록 더욱 끈적한 형태가 된다. 낫또키나제 효소는 혈전 용해 효과가 뛰어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낫또는 일본 음식 중에서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냄새와 식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낫또 섭취를 꺼리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발효식품, 낫또의 품목분류 사례를 알아보겠다.

2. 분류 사례

○ 개요

- 대두에 낫또균을 접종해 발효시킨 물품과 수지제 봉지로 소포장한 쇠고기조미소스 및 연겨자를 함께 스티로폼 용기에 포장한 것 3개를 한 묶음으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68g(56g × 3)]

- 용도 : 식용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2008.19-900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다.

본 물품은 대두에 낫또균을 접종해 발효시킨 생낫또에 조미소스와 연겨자를 함께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대두 조제품인 생낫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 <후략>
류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호	(제2008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후략>
HSK	(제2008.1호)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2008.19호)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제2008.19-9000호) 기타

4. 품목분류 유의사항

①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해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뤄진 물품으로 봐 분류(통칙 제3호 나목)

②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

③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은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

※ 본 물품은 대두에 낫또균을 접종해 발효시킨 생낫또(제2008호)에 조미소스(제2103호)와 연겨자(제2103호)를 함께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요소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이므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하며, 대두 조제품인 생낫또에 본직절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제2008호에 분류됨을 유의해야 함.

5.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2008.19-9000호
품명	Soybean preparation; 제주콩으로 만든 생낫또; R.KOREA
물품 설명	- 대두에 낫또균을 접종해 발효시킨 물품과 수지제 봉지로 소포장한 쇠고기조미소스 및 연겨자를 함께 스티로폼 용기에 포장한 것 3개를 한 묶음으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68g(56g × 3)] - 용도 : 식용
관련 이미지	

욕실용 발매트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어떤 집에 가든 화장실 문 앞에 대부분 발매트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에 젖은 발을 보송보송하게 해주는 발매트는 주방이나 욕실 등 물기가 있는 곳에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발매트는 물기를 잘 흡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항균작용도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다.

최근 친환경 소재로 만든 규조토 발매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규조토는 단세포 생물인 규조가 죽은 후 그 유해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이나 퇴적물을 말한다. 내부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 액체를 흡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발매트에 주로 사용되는 규조토는 노벨상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다이너마이트' 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광산에서 사용하던 폭발성이 뛰어난 폭약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액상인 탓에 휘발성이 매우 강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폭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군수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알프레드 노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용기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채운 후 목제 점화 플러그를 끼워 넣는 '산업용 폭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여전히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벨은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운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때 용기 밖으로 흘러나온 나이트로글리세린이 그 주위에 있던 규조토에 바로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된다. 다른 재료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였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노벨은 규조토와 나이트로글리세린을 배합해 반죽 형태의 폭약을 제조한다. 기존의 액체 폭약보다 사용과 취급은 훨씬 편리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폭약에 힘을 뜻하는 그리스어 '디나미스'에서 따온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규조토로 만든 발매트의 분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타원형의 판상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에 해당하는 제3918.10-9000호로 신고했다.

먼저 본 물품은 규조토, 식물성 섬유질 등을 혼합·성형 후 건조해 타원형의 판상으로 만든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하며 ; 그러므로 예를 들면, 제69류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제69류에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을 분류하며, 총설에서는 “(iv) 소성(燒成 : firing) - 이 공정에서 ‘소성하지 않은 도자기류(green ware)’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섭씨 800°C나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화학적 변이·부분적 용융(鎔融)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규조토 주성분에 셀룰로오스 섬유를 혼합하고 성형한 본 물품은 소성 과정이 없으므로 제69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물품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NON ASBESTOS SILICATE CALCIUM BOARD	3918.10-9000 (FCN1 0%)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6815.99-0000 (FCN1 2.1%)

탁주는 지방산, 소주는 말론산 ··· 전통주별 맛·향 차이나는 이유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최근 농촌진흥청과 건국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소주·약주·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의 성분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통주 48개를 수집해 탁주, 약주, 소주로 구분한 뒤 전통주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대사산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탁주는 옥타데카노산, 노나노산, 옥타노산 등 지방산이 풍부해 버터 맛, 크림 향, 과일 향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주는 숙신산, 헵타노산, 헥사데카노산을 포함해 짭짤한 맛과 기름 향, 달콤한 맛이 났으며 부드러운 풍미가 있었다. 소주는 말론산을 주요 대사체로 가지고 있어 깔끔하고 산뜻한 맛이라는 점이 나타났다.

이중 건강에 보다 나은 것은 탁주라고 한다. 탁주는 유산균과 지방산이 풍부해 장 건강과 소화에 도움을 주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은 피로 해소 효과가 있다. 하지만 탁주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당분과 열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체중이 증가하고 혈당이 오른다는 단점도 제시됐다.

술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술이 일으키는 암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폐암 등 다양하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만성 염증을 일으켜 암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암연구소는 비록 1 ~ 2잔 정도의 술도 유해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관세율표에서 술과 그 주성분을 이루는 에틸알코올은 순도 여하를 불문하고 제22류 '음료·주류·식초'에 분류된다. 주정(ethyl alcohol)은 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2207호에, 탁주(막걸리)와 약주는 발효주로서 제2206호, 소주(soju㉾)는 증류주로서 위스키 등과 함께 제2208호에 각기 분류된다.

또한 관세율표에서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 함량이 전 용량의 0.5% 이하인 음료(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주세법」에서는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규정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27호_2025.4.21.

최신개정법령

고시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시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3호, 2025. 4. 1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1호(2024.12.19. 시행)에 따른 다음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기간을「관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4.12.19.~ 2025.4.18.(4개월)에서 2024.12.19.~2025.7.18.(7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4.1010, 7219.35.9000, 7219.32.9000, 7219.34.1090, 7219.90.1010, 7219.33.1010, 7219.34.9000, 7219.90.1090, 7219.33.1090, 7219.35.1010, 7219.90.9000, 7219.33.9000, 7219.35.109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베트남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6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11.37
	3. 그 밖의 공급자	4.79

라. 부과기간 : (당초) 2024. 12. 19. ~ 2025. 4. 18. (4개월)
(변경) 2024. 12. 19. ~ 2025. 7. 18.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5-12호, 2025. 4. 16.)

「식물방역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개정 이유 ◇

□ 양국 검역당국이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추가 및 저온처리요건 변경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이스라엘산 감귤류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목록 수정(별표 1)
나. 변경된 저온처리 요건 관련 조항 수정(제8조, 제10조제4항제1호, 제11조제4항제1호)
다. 이스라엘의 식물위생상황 변경 시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제14조)
라. 참여기관명의 약자를 국문으로 변경(제5조~제7조, 제9조~제11조, 제13조, 별표2)
마. 유사코드린나방의 약자를 국명으로 변경(제5조, 제6조, 제9조~제13조)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스라엘산 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5조 관련)

1. 금지해충(3종)

Ceratitis capitata, *Cryptophlebia leucotreta*, *Bactrocera zonata*

2. 관리병해충(43종)

Plenodomus tracheiphilus, *Fusarium oxysporum* f. sp. *citri*, *Neoscytalidium dimidiatum*, *Phytophthora hibernalis*,

Acaudaleyrodes rachipora, *Aleurothrixus floccosus*, *Aonidiella aurantii*, *A. orientalis*, *Aspidiotus nerii*, *Apate monachus*, *Bemisia afer*, *Brevipalpus phoenicis*, *Ceroplastes floridensis*, *C. rusci*, *Chaetanaphothrips orchidii*, *Neoaliturus tenellus*, *Coccus capparidis*, *C. longulus*, *Milviscutulus mangiferae*, *Contarinia citri*, *Cryptoblabes gnidiella*, *Ectomyelois ceratoniae*, *Jacobiasca lybica*, *Asymmetrasca decedens*, *Empoasca decipiens*, *Euzopherodes vapidella*, *Aceria sheldoni*, *Eutetranychus orientalis*, *Icerya aegyptiaca*, *I. seychellarum*, *Lepidosaphes beckii*, *Maladera insanabilis*, *Neoaliturus haematoceps*, *Nipaecoccus viridis*, *Pantomorus cervinus*, *Parabemisia myricae*, *Paraleyrodes minei*, *Parlatoria cinerea*, *Phyllocoptruta oleivora*, *Prays citri*, *Protopulvinaria pyriformis*, *Pseudococcus cryptus*, *P. longispinus*

※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병해충이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분류동정 및 위험분석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한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27호_2025.4.21.

부록

- **美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자동차부품 美·韓 관세율표 연계표**
- **美 관세부과 대상 철강 파생제품의 美·韓 관세율표 연계표**
- **美 관세부과 대상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美·韓 관세율표 연계표**

※ 본 연계표는 업무 참고용이며, 수출입 물품이 해당 관세율표에 부합하는지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美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자동차부품 美·韓 관세율표 연계표

■ 자동차

※ 유의사항

○ 본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HTS)와 한국의 품목번호(HSK)를 연계하여,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본 연계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미국 품목번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 관세당국의 권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HTS 품목번호 (공고 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
8703.22.01	8703.22-7000 8703.22-8000	25%
8703.23.01	8703.23-1010 8703.23-1020 8703.23-9010 8703.23-9020	25%
8703.24.01	8703.24-1010 8703.24-1020 8703.24-9010 8703.24-9020	25%
8703.31.01	8703.31-7000 8703.31-8000	25%
8703.32.01	8703.32-1010 8703.32-1020 8703.32-9010 8703.32-9020	25%
8703.33.01	8703.33-7000 8703.33-8000	25%
8703.40.00	8703.40-1000 8703.40-2000	25%
8703.50.00	8703.50-1000 8703.50-2000	25%
8703.60.00	8703.60-1000 8703.60-2000	25%
8703.70.00	8703.70-1000 8703.70-2000	25%
8703.80.00	8703.80-1000 8703.80-2000	25%

미국 HTS 품목번호 (공고 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
8703.90.01	8703.90-0000	25%
8704.21.01	8704.21-1010 8704.21-1020 8704.21-9010 8704.21-9020 8704.21-9090	25%
8704.31.01	8704.31-1010 8704.31-1020 8704.31-9010 8704.31-9020 8704.31-9090	25%
8704.41.00	8704.41-1010 8704.41-1020 8704.41-9010 8704.41-9020 8704.41-9090	25%
8704.51.00	8704.51-1010 8704.51-1020 8704.51-9010 8704.51-9020 8704.51-9090	25%
8704.60.00	8704.60-1010 8704.60-1020 8704.60-9010 8704.60-9020 8704.60-9090	25%

■ 자동차 부품

※ 유의사항

○ 본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HTS)와 한국의 품목번호(HSK)를 연계하여,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본 연계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미국 품목번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 관세당국의 권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HTS 품목번호 (공고 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
4009.12.0020	4009.12-0000	25%
4009.22.0020	4009.22-0000	25%
4009.32.0020	4009.32-0000	25%
4009.42.0020	4009.42-0000	25%
4011.10.10.	4011.10-1000	25%
4011.10.50	4011.10-2000 4011.10-9000	25%
4011.20.10	4011.20-1010 4011.20-1090	25%
4012.19.40	4012.19-0000	25%
4012.19.80	4012.19-0000	25%
4012.20.60	4012.20-9010 4012.20-9020 4012.20-9090	25%
4013.10.0010	4013.10-1000	25%
4013.10.0020	4013.10-2000	25%
4016.99.6010	4016.99-1090 4016.99-2000 4016.99-9000	25%
7007.21.51	7007.21-1000 7007.21-2000	25%
7009.10.00	7009.10-0000	25%
7320.10	7320.10-1000 7320.10-2000 7320.10-9000	25%
7320.20.10	7320.20-1000 7320.20-2000	25%
8301.20.00	8301.20-0000	25%
8302.10.30.	8302.10-0000	25%

미국 HTS 품목번호 (공고 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
8302.30	8302.30-0000	25%
8407.31.00	8407.31-1000 8407.31-9000	25%
8407.32	8407.32-1000 8407.32-9000	25%
8407.33	8407.33-1000 8407.33-9000	25%
8407.34	8407.34-1000 8407.34-9000	25%
8408.20.20	8408.20-1000 8408.20-2000 8408.20-3000 8408.20-4000 8408.20-5000	25%
8409.91.1040	8409.91-1000	25%
8409.99.1040	8409.99-7000	25%
8413.30.10	8413.30-4000 8413.30-9000	25%
8413.30.90	8413.30-4000 8413.30-9000	25%
8413.91.10	8413.91-2000 8413.91-3000 8413.91-4000 8413.91-5000 8413.91-9000	25%
8413.91.9010	8413.91-1000 8413.91-2000 8413.91-3000 8413.91-4000 8413.91-5000 8413.91-9000	25%
8414.30.8030	8414.30-1000 8414.30-2000	25%
8414.59.30	8414.59-9000	25%
8414.59.6540	8414.59-9000	25%
8414.80.05	8414.80-9211 8414.80-9219 8414.80-9220 8414.80-9230	25%

미국 HTS 품목번호 (공고 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
8415.20.00	8415.20-0000	25%
8421.23.00	8421.23-1000 8421.23-2000 8421.23-9000	25%
8421.32.00	8421.32-0000	25%
8425.49.00	8425.49-1000 8425.49-2000	25%
8426.91.00	8426.91-0000	25%
8431.10.0090	8431.10-0000	25%
8471	8471	25%
8482.10.10	8482.10-2000 8482.10-9000	25%
8482.10.5044	8482.10-2000	25%
8482.10.5048	8482.10-2000	25%
8482.20.0020	8482.20-0000	25%
8482.20.0030	8482.20-0000	25%
8482.20.0040	8482.20-0000	25%
8482.20.0061	8482.20-0000	25%
8482.20.0070	8482.20-0000	25%
8482.20.0081	8482.20-0000	25%
8482.40.00	8482.40-0000	25%
8482.50.00	8482.50-0000	25%
8483.10.1030	8483.10-9010	25%
8483.10.30	8483.10-1000 8483.10-9010 8483.10-9090	25%
8501.32	8501.32-1000 8501.32-2000	25%
8501.33	8501.33-1000 8501.33-2010 8501.33-2090	25%
8501.34	8501.34-1000 8501.34-2000	25%
8501.40	8501.40-1000 8501.40-2000 8501.40-3000 8501.40-4000	25%

미국 HTS 품목번호 (공고 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
8501.51	8501.51-0000	25%
8501.52	8501.52-1000 8501.52-9000	25%
8507.10	8507.10-0000	25%
8507.60	8507.60-2000 8507.60-3000	25%
8507.90.40	8507.90-1000 8507.90-9000	25%
8507.90.80	8507.90-1000 8507.90-9000	25%
8511.10.0000	8511.10-2000	25%
8511.20.00	8511.20-9000	25%
8511.30.0040	8511.30-9000	25%
8511.30.0080	8511.30-9000	25%
8511.40.00	8511.40-2000	25%
8511.50.00	8511.50-9000	25%
8511.80.20	8511.80-9000	25%
8511.80.60	8511.80-9000	25%
8511.90.6020	8511.90-9000	25%
8511.90.6040	8511.90-9000	25%
8512.20.20	8512.20-1010 8512.20-1090	25%
8512.20.40	8512.20-2010 8512.20-2090	25%
8512.30.00	8512.30-0000	25%
8512.40.20	8512.40-0000	25%
8512.40.40	8512.40-0000	25%
8512.90.20	8512.90-0000	25%
8512.90.60	8512.90-0000	25%
8512.90.70	8512.90-0000	25%
8519.81.20	8519.81-2000 8519.81-6000	25%
8525.60.1010	8525.60-1000 8525.60-2000 8525.60-9000	25%
8527.21	8527.21-1000 8527.21-2010	25%

미국 HTS 품목번호 (공고 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
	8527.21-2090 8527.21-3010 8527.21-3090 8527.21-9010 8527.21-9090	
8527.29	8527.29-0000	25%
8536.41.0005	8536.41-0000	25%
8537.10	8537.10-3000 8537.10-4000 8537.10-5010 8537.10-5020 8537.10-5090	25%
8537.20	8537.20-3000 8537.20-4000	25%
8539.10.0010	8539.10-0000	25%
8539.10.0050	8539.10-0000	25%
8544.30.00	8544.30-0000	25%
8706.00.03	8706.00-4000	25%
8706.00.05	8706.00-1000 8706.00-2000 8706.00-4000	25%
8706.00.15	8706.00-3000	25%
8706.00.25	8706.00-5000	25%
8707	8707.10-0000 8707.90-1000 8707.90-2000 8707.90-3000 8707.90-4000	25%
8707.10.0020	8707.10-0000	25%
8707.10.0040	8707.10-0000	25%
8707.90.5020	8707.90-1000	25%
8707.90.5040	8707.90-2000	25%
8707.90.5060	8707.90-3000	25%
8707.90.5080	8707.90-4000	25%
8708.10.30	8708.10-0000	25%
8708.10.60	8708.10-0000	25%
8708.21.00	8708.21-0000	25%
8708.22	8708.22-0000	25%

미국 HTS 품목번호 (공고 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
8708.29	8708.29-0000	25%
8708.30	8708.30-1000 8708.30-2000 8708.30-3000 8708.30-9000	25%
8708.40.11	8708.40-0000	25%
8708.40.70	8708.40-0000	25%
8708.40.75	8708.40-0000	25%
8708.50	8708.50-1000 8708.50-2000	25%
8708.70	8708.70-0000	25%
8708.80	8708.80-0000	25%
8708.91	8708.91-0000	25%
8708.93.60	8708.93-0000	25%
8708.93.75	8708.93-0000	25%
8708.94	8708.94-0000	25%
8708.95	8708.95-1000 8708.95-9000	25%
8708.99.53	8708.99-1010 8708.99-1020 8708.99-1030 8708.99-1040 8708.99-1050 8708.99-9000	25%
8708.99.55	8708.99-9000	25%
8708.99.58	8708.99-1010 8708.99-1020 8708.99-1030 8708.99-1040 8708.99-1050 8708.99-9000	25%
8708.99.68	8708.99-1010 8708.99-1020 8708.99-1030 8708.99-1040 8708.99-1050 8708.99-9000	25%
8716.90.50	8716.90-1000 8716.90-9000	25%

미국 HTS 품목번호 (공고 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
9015.10	9015.10-0000	25%
9029.10	9029.10-1000 9029.10-2000 9029.10-9000	25%
9029.20.4080	9029.20-1010 9029.20-1090	25%
9401.20.00	9401.20-0000	25%

美 관세부과 대상 철강 파생제품의 美·韓 관세율표 연계표

■ 철강

※ 유의사항

ㅇ 본 연계표는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 9903.81.90 및 9903.81.91에 해당하는 철강 파생제품의 품목번호와 한국의 품목번호(HSK)를 연계한 자료로, 미국으로 철강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연계표는 모든 보편관세 부과 대상 철강 및 그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한 연계표가 아니며, 오직 해당 품목번호(HTS)에 해당하는 품목(HSK)만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연계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미국 품목번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 관세당국의 권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과세율(D)에 '함량과세'로 표시된 품목은 제품의 철강 함량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결정됩니다.

- 철강 함량을 모르는 경우 물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7301.20.10	73012010	7301.20-1000 7301.20-2000 7301.20-3000 7301.20-9000	25%
7301.20.50	73012050	7301.20-1000 7301.20-2000 7301.20-3000 7301.20-9000	25%
7302.30.00	73023000	7302.30-0000	25%
7307.21.10	73072110	7307.21-0000	25%
7307.21.50	73072150	7307.21-0000	25%
7307.22.10	73072210	7307.22-1000	25%
7307.22.50	73072250	7307.22-9000	25%
7307.23.00	73072300	7307.23-0000	25%
7307.29.00	73072900	7307.29-0000	25%
7307.91.10	73079110	7307.91-0000	25%
7307.91.30	73079130	7307.91-0000	25%
7307.91.50	73079150	7307.91-0000	25%
7307.92.30	73079230	7307.92-1000	25%
7307.92.90	73079290	7307.92-9000	25%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7307.93.30	73079330	7307.93-0000	25%
7307.93.60	73079360	7307.93-0000	25%
7307.93.90	73079390	7307.93-0000	25%
7307.99.10	73079910	7307.99-9000	25%
7307.99.30	73079930	7307.99-9000	25%
7307.99.50	73079950	7307.99-1000 7307.99-9000	25%
7308.10.00	73081000	7308.10-0000	25%
7308.20.00	73082000	7308.20-0000	25%
7308.30.10	73083010	7308.30-0000	25%
7308.30.50	73083050	7308.30-0000	25%
7308.40.00	73084000	7308.40-0000	25%
7308.90.30	73089030	7308.90-9000	25%
7308.90.60	73089060	7308.90-9000	25%
7308.90.70	73089070	7308.90-9000	25%
7308.90.95	73089095	7308.90-1000 7308.90-9000	25%
7309.00.00	73090000	7309.00-0000	25%
7310.10.00	73101000	7310.10-0000	25%
7310.21.00	73102100	7310.21-0000	25%
7310.29.00	73102900	7310.29-0000	25%
7311.00.00	73110000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25%
7312.10.05	73121005	7312.10-1011	25%
7312.10.10	73121010	7312.10-1019	25%
7312.10.20	73121020	7312.10-1091	25%
7312.10.30	73121030	7312.10-1092 7312.10-1099	25%
7312.10.50	73121050	7312.10-2011	25%
7312.10.60	73121060	7312.10-2019	25%
7312.10.70	73121070	7312.10-2091	25%
7312.10.80	73121080	7312.10-2091 7312.10-2092 7312.10-2099	25%
7312.10.90	73121090	7312.10-2091 7312.10-2092	25%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7312.10-2099	
7312.90.00	73129000	7312.90-0000	25%
7313.00.00	73130000	7313.00-1000 7313.00-9000	25%
7314.12.10	73141210	7314.12-0000	25%
7314.12.20	73141220	7314.12-0000	25%
7314.12.30	73141230	7314.12-0000	25%
7314.12.60	73141260	7314.12-0000	25%
7314.12.90	73141290	7314.12-0000	25%
7314.14.10	73141410	7314.14-0000	25%
7314.14.20	73141420	7314.14-0000	25%
7314.14.30	73141430	7314.14-0000	25%
7314.14.60	73141460	7314.14-0000	25%
7314.14.90	73141490	7314.14-0000	25%
7314.19.01	73141901	7314.19-0000	25%
7314.20.00	73142000	7314.20-0000	25%
7314.31.10	73143110	7314.31-0000	25%
7314.31.50	73143150	7314.31-0000	25%
7314.39.00	73143900	7314.39-0000	25%
7314.41.00	73144100	7314.41-0000	25%
7314.42.00	73144200	7314.42-0000	25%
7314.49.30	73144930	7314.49-0000	25%
7314.49.60	73144960	7314.49-0000	25%
7314.50.00	73145000	7314.50-0000	25%
7315.11.00	73151100	7315.11-0000	25%
7315.12.00	73151200	7315.12-0000	25%
7315.19.00	73151900	7315.19-0000	25%
7315.20.10	73152010	7315.20-0000	25%
7315.20.50	73152050	7315.20-0000	25%
7315.81.00	73158100	7315.81-0000	25%
7315.82.10	73158210	7315.82-0000	25%
7315.82.30	73158230	7315.82-0000	25%
7315.82.50	73158250	7315.82-0000	25%
7315.82.70	73158270	7315.82-0000	25%
7315.89.10	73158910	7315.89-0000	25%
7315.89.30	73158930	7315.89-0000	25%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7315.89.50	73158950	7315.89-0000	25%
7315.90.00	73159000	7315.90-0000	25%
7316.00.00	73160000	7316.00-1000 7316.00-2000	25%
7317.00.10	73170010	7317.00-2000	25%
7317.00.20	73170020	7317.00-1011 7317.00-1019 7317.00-1021 7317.00-1029 7317.00-3000 7317.00-4000 7317.00-5000 7317.00-9000	25%
7317.00.30	73170030	7317.00-1011 7317.00-1019 7317.00-1021 7317.00-1029 7317.00-3000 7317.00-4000 7317.00-5000 7317.00-9000	25%
7317.00.55	73170055	7317.00-1011 7317.00-1019 7317.00-3000 7317.00-4000 7317.00-5000 7317.00-9000	25%
7317.00.65	73170065	7317.00-1011 7317.00-1019 7317.00-3000 7317.00-4000 7317.00-5000 7317.00-9000	25%
7317.00.75	73170075	7317.00-1021 7317.00-1029	25%
7318.11.00	73181100	7318.11-0000	25%
7318.12.00	73181200	7318.12-0000	25%
7318.13.00	73181300	7318.13-0000	25%
7318.14.10	73181410	7318.14-0000	25%
7318.14.50	73181450	7318.14-0000	25%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7318.15.20	73181520	7318.15-2000 7318.15-3000 7318.15-9000	25%
7318.15.40	73181540	7318.15-1000	25%
7318.15.50	73181550	7318.15-9000	25%
7318.15.60	73181560	7318.15-9000	25%
7318.15.80	73181580	7318.15-9000	25%
7318.16.00	73181600	7318.16-0000	25%
7318.19.00	73181900	7318.19-0000	25%
7318.21.00	73182100	7318.21-0000	25%
7318.22.00	73182200	7318.22-0000	25%
7318.23.00	73182300	7318.23-0000	25%
7318.24.00	73182400	7318.24-0000	25%
7318.29.00	73182900	7318.29-0000	25%
7319.40.20	73194020	7319.40-1000	25%
7319.40.30	73194030	7319.40-2000 7319.40-9000	25%
7319.40.50	73194050	7319.40-2000 7319.40-9000	25%
7319.90.10	73199010	7319.90-1010 7319.90-1020 7319.90-1090	25%
7319.90.90	73199090	7319.90-9000	25%
7320.10.30	73201030	7320.10-1000	25%
7320.10.60	73201060	7320.10-1000	25%
7320.10.90	73201090	7320.10-2000 7320.10-9000	25%
7320.20.10	73202010	7320.20-1000	25%
7320.20.50	73202050	7320.20-2000 7320.20-3000 7320.20-4000 7320.20-9000	25%
7320.90.10	73209010	7320.90-1000 7320.90-9000	25%
7320.90.50	73209050	7320.90-1000 7320.90-9000	25%
7321.11.10	73211110	7321.11-0000	25%
7321.11.30	73211130	7321.11-0000	25%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7321.11.60	73211160	7321.11-0000	25%
7321.12.00	73211200	7321.12-0000	25%
7321.19.00	73211900	7321.19-0000	25%
7321.81.10	73218110	7321.81-0000	25%
7321.81.50	73218150	7321.81-0000	25%
7321.82.10	73218210	7321.82-0000	25%
7321.82.50	73218250	7321.82-0000	25%
7321.89.00	73218900	7321.89-0000	25%
7321.90.10	73219010	7321.90-0000	25%
7321.90.20	73219020	7321.90-0000	25%
7321.90.40	73219040	7321.90-0000	25%
7321.90.50	73219050	7321.90-0000	25%
7321.90.60	73219060	7321.90-0000	25%
7322.19.00	73221900	7322.19-1000 7322.19-2000	25%
7322.90.00	73229000	7322.90-1000 7322.90-9010 7322.90-9020 7322.90-9030	25%
7323.10.00	73231000	7323.10-0000	25%
7323.93.00	73239300	7323.93-0000	25%
7323.94.00	73239400	7323.94-0000	25%
7323.99.10	73239910	7323.99-0000	25%
7323.99.30	73239930	7323.99-0000	25%
7323.99.50	73239950	7323.99-0000	25%
7323.99.70	73239970	7323.99-0000	25%
7323.99.90	73239990	7323.99-0000	25%
7324.10.00	73241000	7324.10-1000 7324.10-2000	25%
7324.29.00	73242900	7324.29-1000 7324.29-9000	25%
7324.90.00	73249000	7324.90-1000 7324.90-8000 7324.90-9000	25%
7325.91.00	73259100	7325.91-0000	25%
7325.99.10	73259910	7325.99-1000	25%
7325.99.50	73259950	7325.99-2000	25%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7325.99-3000 7325.99-9000	
7326.11.00	73261100	7326.11-0000	25%
7326.19.00	73261900	7326.19-0000	25%
7326.20.00	73262000	7326.20-0000	25%
7326.90.10	73269010	7326.90-1000 7326.90-9000	25%
7326.90.25	73269025	7326.90-1000 7326.90-9000	25%
7326.90.35	73269035	7326.90-1000 7326.90-9000	25%
7326.90.45	73269045	7326.90-1000 7326.90-9000	25%
7326.90.60	73269060	7326.90-1000 7326.90-9000	25%
7326.90.86	73269086	7326.90-1000 7326.90-9000	25%
8431.31.00	84313100	8431.31-0000	함량과세
8431.42.00	84314200	8431.42-0000	함량과세
8431.49.10	84314910	8431.49-1000 8431.49-2000 8431.49-9000	함량과세
8431.49.90	84314990	8431.49-1000 8431.49-2000 8431.49-9000	함량과세
8432.10.00	84321000	8432.10-0000	함량과세
8432.90.00	84329000	8432.90-1000 8432.90-2000 8432.90-9000	함량과세
8547.90.00	85479000	8547.90-0000	함량과세
9403.20.00	94032000	9403.20-1000 9403.20-9000	함량과세
9405.99.20	94059920	9405.99-0000	함량과세
9405.99.40	94059940	9405.99-0000	함량과세
9406.20.00	94062000	9406.20-0000	함량과세
9406.90.01	94069001	9406.90-2000 9406.90-9000	함량과세

美 관세부과 대상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美·韓 관세율표 연계표

■ 알루미늄

※ 유의사항

○ 본 연계표는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 9903.85.07 및 9903.85.08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품목번호와 한국의 품목번호(HSK)를 연계한 자료로, 미국으로 알루미늄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연계표는 모든 보편관세 부과 대상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한 연계표가 아니며, 오직 해당 품목번호(HTS)에 해당하는 품목(HSK)만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연계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미국 품목번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 관세당국의 권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세율(D)에 '함량과세'로 표시된 품목은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결정됩니다.

- 알루미늄 함량을 모르는 경우 물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4.4 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발표에 따른 물품이 추가되었습니다.

- 미국 HTS 공고 번호(2203.00.0060, 2203.00.0090, 7612.90.10)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2203.00.0060		2203.00-0000	함량과세
2203.00.0090		2203.00-0000	함량과세
6603.90.8100	66039081	6603.90-0000	함량과세
7610.10.00	76101000	7610.10-0000	25%
7610.90.00	76109000	7610.90-1000 7610.90-8000 7610.90-9000	25%
7612.90.10		7612.90-1000 7612.90-9010 7612.90-9020	25%
7615.10.2015	76151020	7615.10-9020 7615.10-9090	25%
7615.10.2025	76151020	7615.10-9020 7615.10-9090	25%
7615.10.3015	76151030	7615.10-9020 7615.10-9090	25%
7615.10.3025	76151030	7615.10-9020	25%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7615.10-9090	
7615.10.5020	76151050	7615.10-9020 7615.10-9090	25%
7615.10.5040	76151050	7615.10-9020 7615.10-9090	25%
7615.10.7125	76151071	7615.10-9020 7615.10-9090	25%
7615.10.7130	76151071	7615.10-9020 7615.10-9090	25%
7615.10.7155	76151071	7615.10-9020 7615.10-9090	25%
7615.10.7180	76151071	7615.10-9020 7615.10-9090	25%
7615.10.9100	76151091	7615.10-9010 7615.10-9020 7615.10-9030 7615.10-9090	25%
7615.20.0000	76152000	7615.20-1000 7615.20-2000	25%
7616.10.9090	76161090	7616.10-0000	25%
7616.99.1000	76169910	7616.99-9090	25%
7616.99.5130	76169951	7616.99-9090	25%
7616.99.5140	76169951	7616.99-9090	25%
7616.99.5190	76169951	7616.99-1000 7616.99-9010 7616.99-9020 7616.99-9090	25%
8302.10.3000	83021030	8302.10-0000	함량과세
8302.10.6030	83021060	8302.10-0000	함량과세
8302.10.6060	83021060	8302.10-0000	함량과세
8302.10.6090	83021060	8302.10-0000	함량과세
8302.20.0000	83022000	8302.20-0000	함량과세
8302.30.3010	83023030	8302.30-0000	함량과세
8302.30.3060	83023030	8302.30-0000	함량과세
8302.41.3000	83024130	8302.41-1000	함량과세
8302.41.6015	83024160	8302.41-1000	함량과세
8302.41.6045	83024160	8302.41-1000	함량과세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8302.41.6050	83024160	8302.41-1000 8302.41-9000	함량과세
8302.41.6080	83024160	8302.41-1000 8302.41-9000	함량과세
8302.42.3010	83024230	8302.42-0000	함량과세
8302.42.3015	83024230	8302.42-0000	함량과세
8302.42.3065	83024230	8302.42-0000	함량과세
8302.49.6035	83024960	8302.49-9000	함량과세
8302.49.6045	83024960	8302.49-9000	함량과세
8302.49.6055	83024960	8302.49-9000	함량과세
8302.49.6085	83024960	8302.49-1000 8302.49-9000	함량과세
8302.50.0000	83025000	8302.50-0000	함량과세
8302.60.3000	83026030	8302.60-0000	함량과세
8302.60.9000	83026090	8302.60-0000	함량과세
8305.10.0050	83051000	8305.10-0000	함량과세
8306.30.0000	83063000	8306.30-1000 8306.30-2000	함량과세
8414.59.6590	84145965	8414.59-1000 8414.59-9000	함량과세
8415.90.8025	84159080	8415.90-0000	함량과세
8415.90.8045	84159080	8415.90-0000	함량과세
8415.90.8085	84159080	8415.90-0000	함량과세
8418.99.8005	84189980	8418.99-1000 8418.99-9000	함량과세
8418.99.8050	84189980	8418.99-1000 8418.99-9000	함량과세
8418.99.8060	84189980	8418.99-1000 8418.99-9000	함량과세
8419.50.5000	84195050	8419.50-1000 8419.50-2000 8419.50-9000	함량과세
8419.90.1000	84199010	8419.90-9010	함량과세
8422.90.0640	84229006	8422.90-1000 8422.90-2000 8422.90-9000	함량과세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8424.90.9080	84249090	8424.90-2000 8424.90-3000 8424.90-9010 8424.90-9020 8424.90-9090	함량과세
8473.30.2000	84733020	8473.30-1000 8473.30-2000 8473.30-4060 8473.30-4090	함량과세
8473.30.5100	84733051	8473.30-1000 8473.30-2000 8473.30-3000 8473.30-4060 8473.30-4090	함량과세
8479.89.9599	84798995	8479.89-1010 8479.89-1090 8479.89-9010 8479.89-9020 8479.89-9030 8479.89-9050 8479.89-9060 8479.89-9080 8479.89-9091 8479.89-9099	함량과세
8479.90.8500	84799085	8479.90-1020 8479.90-1030 8479.90-9090	함량과세
8479.90.9596	84799095	8479.90-1010 8479.90-1020 8479.90-1030 8479.90-2000 8479.90-3000 8479.90-4000 8479.90-5010 8479.90-5090 8479.90-9020 8479.90-9030 8479.90-9050 8479.90-9060 8479.90-9070 8479.90-9090	함량과세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8481.90.9060	84819090	8481.90-0000	함량과세
8481.90.9085	84819090	8481.90-0000	함량과세
8486.90.0000	84869000	8486.90-1000 8486.90-2030 8486.90-2040 8486.90-2090 8486.90-3050 8486.90-3060 8486.90-3090 8486.90-4000	함량과세
8487.90.0080	84879000	8487.90-1000 8487.90-9010 8487.90-9090	함량과세
8503.00.9520	85030095	8503.00-1000	함량과세
8508.70.0000	85087000	8508.70-1000 8508.70-2000 8508.70-3000	함량과세
8513.90.2000	85139020	8513.90-0000	함량과세
8515.90.2000	85159020	8515.90-1010 8515.90-1090	함량과세
8516.90.5000	85169050	8516.90-0000	함량과세
8516.90.8050	85169080	8516.90-0000	함량과세
8517.71.0000	85177100	8517.71-1000 8517.71-9000	함량과세
8517.79.0000	85177900	8517.79-1010 8517.79-1020 8517.79-1030 8517.79-2000 8517.79-3000 8517.79-4000	함량과세
8529.90.7300	85299073	8529.90-3020 8529.90-4000	함량과세
8529.90.9760	85299097	8529.90-4000	함량과세
8536.90.8585	85369085	8536.90-9010 8536.90-9090	함량과세
8538.10.0000	85381000	8538.10-0000	함량과세
8541.90.0000	85419000	8541.90-2000 8541.90-3000 8541.90-9000	함량과세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8543.90.8885	85439088	8543.90-1000 8543.90-9000	함량과세
8547.90.0020	85479000	8547.90-0000	함량과세
8547.90.0030	85479000	8547.90-0000	함량과세
8547.90.0040	85479000	8547.90-0000	함량과세
8708.10.3050	87081030	8708.10-0000	함량과세
8708.10.60	87081060	8708.10-0000	함량과세
8708.29.5160	87082951	8708.29-0000	함량과세
8708.80.6590	87088065	8708.80-0000	함량과세
8708.99.6890	87089968	8708.99-1020 8708.99-1050 8708.99-9000	함량과세
8716.80.5010	87168050	8716.80-1000 8716.80-2000	함량과세
8807.30.0060	88073000	8807.30-1000 8807.30-2000 8807.30-3000	함량과세
9013.90.8000	90139080	9013.90-9000	함량과세
9031.90.9195	90319091	9031.90-9000	함량과세
9401.99.9081	94019990	9401.99-1000 9401.99-9000	함량과세
9403.10.00	94031000	9403.10-0000	함량과세
9403.20.00	94032000	9403.20-1000 9403.20-9000	함량과세
9403.99.1040	94039910	9403.99-0000	함량과세
9403.99.9010	94039990	9403.99-0000	함량과세
9403.99.9015	94039990	9403.99-0000	함량과세
9403.99.9020	94039990	9403.99-0000	함량과세
9403.99.9040	94039990	9403.99-0000	함량과세
9403.99.9045	94039990	9403.99-0000	함량과세
9405.99.4020	94059940	9405.99-0000	함량과세
9506.11.4080	95061140	9506.11-0000	함량과세
9506.51.4000	95065140	9506.51-0000	함량과세
9506.51.6000	95065160	9506.51-0000	함량과세
9506.59.4040	95065940	9506.59-1000 9506.59-9000	함량과세

미국 HTS 품목번호		한국 HSK 품목번호(C) (미국 HTS를 HSK와 연계)	부과세율(D)
공고 번호(A)	8단위 변환(B)		
9506.70.2090	95067020	9506.70-0000	함량과세
9506.91.0010	95069100	9506.91-0000	함량과세
9506.91.0020	95069100	9506.91-0000	함량과세
9506.91.0030	95069100	9506.91-0000	함량과세
9506.99.0510	95069905	9506.99-0000	함량과세
9506.99.0520	95069905	9506.99-0000	함량과세
9506.99.0530	95069905	9506.99-0000	함량과세
9506.99.1500	95069915	9506.99-0000	함량과세
9506.99.2000	95069920	9506.99-0000	함량과세
9506.99.2580	95069925	9506.99-0000	함량과세
9506.99.2800	95069928	9506.99-0000	함량과세
9506.99.5500	95069955	9506.99-0000	함량과세
9506.99.6080	95069960	9506.99-0000	함량과세
9507.30.2000	95073020	9507.30-0000	함량과세
9507.30.4000	95073040	9507.30-0000	함량과세
9507.30.6000	95073060	9507.30-0000	함량과세
9507.30.8000	95073080	9507.30-0000	함량과세
9507.90.6000	95079060	9507.90-1000 9507.90-9000	함량과세
9603.90.8050	96039080	9603.90-0000	함량과세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